

의안번호	2204693
의 퇴 인	이재강의원
회 답 일	2024.10.22.
추계번호	24C4344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2 (비혼임신기술 지원사업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혼인 중에 있지 않은 성인 여성에 대하여 임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생식술인 비혼임신기술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혼임신기술로 임신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의2 (비혼임신기술 지원사업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비혼임신기술 지원사업(안 제4조의9)

-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)에 있는 여성(비혼 여성)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치료 기술비를 지원하고 있음
 - － 현행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, “난임”이란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)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

[표 1]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요

구 분		횟수 (상한)	건강보험 적용	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¹⁾		
			본인부담률		지원액(상한)		비고
			만 44세 이하	만 45세 이상	만 44세 이하	만 45세 이상	
체외 수정	신선배아	20회	30%	50%	최대 110만원	최대 90만원	기존 소득기준 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) 폐지
	동결배아				최대 50만원	최대 40만원	
인공수정		5회					

주: 1) 본인부담금 외 일부 비급여(자궁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,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, 1년간의 배아동결비용 최대 30만원) 추가 지원

2)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추가 지원 4회로 총 20회 지원

자료: 보건복지부의 「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」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혼 성인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확대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또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혼 성인 여성이 보조생식술로 임신을 하고자 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소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됨
 - 현재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비혼 성인 여성에 대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소양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
 - 그러나 현시점에서 혼인 중에 있지 않은 성인 여성의 구체적인 규모와 보조생식술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고, 시술비와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의 지원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